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자 동 차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이관하고,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021.3.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38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의안번호 2109059)

3. 주요내용

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의 도입(안 제13조의7)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나. 안전기준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의 이관(현행 제13조의8 삭제)

1)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을 제13조의7제1항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전담기관의 업무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제2항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7의 제목 “(전담기관의 지정절차)”를 “(전담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7(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68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 (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담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상설 조직을 갖추는 것
2. 전담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 인력을 갖추는 것
3.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4.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갖추는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는 것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사업추진계획서
3. 자금집행계획서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와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류와 사업추진계획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8을 삭제한다.

제15조제4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중전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중전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3조의7제5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2. 개별기준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8조 의 4 제 4 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68조 의 4 제 4 항 제2호			
1) 제13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지정기 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제13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지정기준 중 둘 이상의 지정기준 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8조 의4제5항	지정취소		
라. 전담기관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 의4제5항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7(전담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68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8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사업추진계획서 3. 자금집행계획서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3조의7(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68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담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상설 조직을 갖출 것 2. 전담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 인력을 갖출 것 3.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와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사업추진계획서
3. 자금집행계획서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와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 ① 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조직을 갖출 것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류와 사업추진계획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2. 전담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 인력을 갖추 것

3.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 것

4.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추
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갖추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 것

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개발 업무

2.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분석
업무

3.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업무

4.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전문가 양성 업
무

5.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

<삭 제>

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 ③ (생략)

④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⑤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⑥ (생략)

<삭 제>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표 1의2----.

⑤ -----

별표 1의3과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연 락 처	(044) 201 - 3850